

특별약관(Special Clause)

1) 협회선급약관(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	3
2) 중요약관(Important Clause) -----	3
3) 냉동화물약관(Refrigerating Cargo Clause) -----	5
4) 냉동기계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	5
5) 통관거부약관(B)(Rejection Clause(B)) -----	6
6) 중고기계수선약관(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 -----	7
7) 기계수선특별약관(Special Replacement Clause) -----	7
8) 국제전시일괄담보특별약관(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	8
9) 협회냉동식품약관-FPA(Institute Frozen Food Clause-FPA and Breakdown) -----	8
10) 협회냉동식품약관-A/R (Institute Frozen Food Clause-All Risks 24 Hours Breakdown) -----	12
11) 생동물약관(B)(Livestock Clause(B)) -----	15
12) 갑판적약관(A)(On-deck Clause(A)) -----	16
13) 갑판적약관(B)(On-deck Clause(B)) -----	16
14) 송유관약관(A)(Pipeline Clause(A)) -----	16
15) 송유관약관(B)(Pipeline Clause(B)) -----	17
16) 산적유약관(Bulk Oil Clause) -----	17
17) 공동보험약관(Co-insurance Clause) -----	20
18) 원산지손해약관(Country Damage Clause) -----	20
19) 관세약관(Customs Duty Clause) -----	20
20) 하송인책임약관(Forwarder's Liability Clause) -----	21
21) 소포우편약관(Parcel Post Clause) -----	21
22) 상표약관(Label Clause) -----	21
23) 실손부분보상원칙(Pair & Set Clause) -----	22
24) 해손정산인약관(Average Adjusters Clause) -----	22
25) 양하후위험담보약관(Risk After Discharge Clause) -----	23
26) 뗏목약관(Raft Clause) -----	23
27) 출항일자담보(Sailing Date Warranty) -----	23
28) 특별검정약관(Special Survey Clause) -----	24
29) 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A)(Transit Termination Clause(30days)(A)) -----	24
30) 운송종료특별약관(30일간)(B)(Transit Termination Clause(30days)(B)) -----	24
31) 어획물보험특별약관(Special Fishing Products Clauses) -----	24

32)개포지연약관(Deferred Unpacking Clause)	25
33)대위권포기약관(Waiver of Subrogation Clause)	25
34)임신동물확장담보약관(Special Clause for Animals () with Embryo)	25
35)활어류약관(A)(Live-Fish Clause(A))	26
36)활어류약관(B)(Live-Fish Clause(B))	26
37)적하ISM약관(Cargo ISM Endorsement Clause)	26
38)건조비약관(Drying Charge Clause)	27
39)갑판적화물특별약관(원목)(Special Clause for On-deck Cargo(Logs))	27
40)고무약관(Rubber Clause)	27
41)원목무역협회약관(Timber Trade Federation Clause)	31
42)컴퓨터밀레니엄약관(Computer Millennium Clause)	34
43)운송종료약관(테러리즘)(Termination of Transit Clause(Terrorism))	34

1) 협회선급약관 INSTITUTE CLASSIFICATION CLAUSE

이 보험의 해상운송 요율은 아래의 선급협회들 중의 어느 하나로부터 선급을 받고 기계의 힘으로 자력 추진되는 철선에 적재 운송되는 화물에만 적용함

Lloyd's Register	100A1 or B.S.	Clas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At	without any
Bureau Veritas ..	1 3/3 E	modification
Germanischer Lloyd	100A4	
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S1	
Nippon Kaiji Kyokai	NS*	
Norske Veritas	1A1	
Registro Italiano	★100A1, 1, Nav.L	
Register of Shipping of the	KM☆	
U.S.S.R.	CCS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단, 위의 선박은

- (i) 선령 15년미만 또는
- (ii) 선령 15년 초과 25년미만으로서 공표된 일정에 따라 특정 항구에서 선적하고 양하하는 정기적인 운항을 하여야 함.

기계로 힘으로 자력추진되는 철선으로서 용선과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은 위 선급을 가져야 하며 또한 선령이 15년미만이어야 함.

항구내에서 선적 또는 양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부선에는 이 선급약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기계로 힘으로 자력추진되는 선박으로서 위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협정될 보험료 및 보험조건을 전제로 하여 담보가 계속됨.

2) 중요사항 IMPORTANT

보험자가 부책하게 될지 모르는 멸실 및 손상의 경우의 절차
운송인, 수탁자, 기타 제3자의 책임

PROCEDURE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FOR WHICH UNDERWRITERS MAY BE LIABLE

LIABILITY OF CARRIERS, BAILEES OR OTHER THIRD PARTIES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운송인, 수탁자 혹은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하게끔 확보해 놓은 것은 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특히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 (1) 운송인, 항만당국 혹은 기타 수탁자에게 여하한 유실물에 대해 즉시 보상청구를 할 것.
 - (2)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화물이 불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됨
 - (3) 컨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책임있는 직원이 즉시 컨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할 것
컨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이나 멸실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바와 상이하게 봉인되어 컨테이너가 인도된 경우, 이에 준하여 화물수령증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이 틀린 모든 봉인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보관할 것.
 - (4)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실질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것.
 - (5) 화물을 인도한때에 멸실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으면 인도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함.
- * 유의사항 : 수탁자 혹은 그 대리인은 양하항에서 항만당국의 제준수사항을 숙지할 것을 요함.

검정을 위한 지침

INSTRUCTIONS FOR SURVEY

이 보험하에서 보상청구할 멸실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이나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회사나 그 대리점에 즉시 사고통보를 하고 검정보고서를 얻어야 함.

보상청구서류

DOCUMENTATION OF CLAIMS

보상청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들은 지체없이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즉,

- (1)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원본
- (2) 선적송장 및 선적명세서 혹은 중량표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 (3) 선하증권 및 기타 운송계약서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 (4) 검정보고서나 또는 멸실 및 손상의 범위를 표시하는 기타 증빙서류
- (5) 양하항과 최종목적지에서의 양륙보고서와 중량증명서
- (6)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과 기타 관계자들 간에 교환된 서신.

3) 냉동화물 약관 REFRIGERATED CARGO CLAUSE

본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냉동실에 적재되어 있는 동안 본 보험계약은, 최소한 24시간 계속된 냉동기계 및 /또는 냉동장치 및 /또는 냉동기기의 교란이나 고장으로 기인한 또는 원인이 된 모든 멸실 및 손상을 확장담보한다. 이 보험에 기인되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손해율에 불문하고 지불된다.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조건으로 담보한다.

본 보험증권에 부보된 화물은 위험개시시에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본 보험증권에 부보된 화물의 일부에 멸실 또는 손상, 혹은 부패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는 즉시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재조사를 위한 수속을 하지 않고, 또는 화물이 이전되기 전에 감가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손해가 발생한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회사의 대리점이 없을 경우에는, Lloyd's 대리점에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들의 확인서는 회사나 손해지급대리점에 제기된 손해발생사실의 거증으로서 첨부되어야 함.

손해보상 청구는 즉시 서면으로 운송업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험증권상에서 제기된 어떠한 보상청구에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에 부보된 화물이 도착시 혹은 도착후에 불량품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산출될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상비용을 감한 정품(正品)시장가액이나 보험가액중 어느 쪽이 더 적든간에 그 적은 쪽의 가액을 초과해서 는 안됨.

보험자 자신이 지정한 검정인의 검정비용이외에는 지불책임을 갖지 않는 회사나 그 대리점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산비용도 부책치 않음.

4) 냉동기관 약관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냉동기관 및 / 또는 냉동장치 및/또는 절연체의 고장 혹은 파열에 의하거나 연유해서 발생한 모든 멸실 또는 손상을 확장 담보함.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을 담보조건으로 함.

만일 이 보험증권에 부보된 화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 혹은 부패된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는 즉시 증권상에 지정된 가장 가까운 회사의 대리점에 통지하지 않거나, 이재조사를 위한 수속을 하지 않고 또는 화물이 이전되기 전에 감가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음.

손해가 발생한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 회사의 대리점이 없을 경우에는, Lloyd's 대리점에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들의 확인서는 회사나 손해지급대리점에 제기된 손해발생사실의 거증으로서 첨부되어야 함.

손해보상 청구는 즉시 서면으로 선박회사 또는 기타의 운송업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 보험증권하에서 제기된 어떠한 보상청구에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보험증권에 부보된 화물이 도착시 혹은 도착후에 불량품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산출될 가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상비용을 감한 정품(正品)시장가액이나 보험가액중 어느 쪽이 더 적은 간에 그 적은 쪽의 가액을 초과해 서는 안됨.

보험자 자신이 지정한 검정인의 검정비용이외에는 지불책임을 갖지 않는 회사나 그 대리점의 서면상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산비용도 부책치 않음.

5) 통관거부위험 담보특별 약관 REJECTION CLAUSE (B)

- A. 1. 본 보험증권은 보험기간 중 하기에 열거된 담보조건과 면책조건011 따간 정부당국, 대행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입항국에서 화물의 통관이 거부되거나 몰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담보함.

본 통관지부위험 담보는 외항선으로부터 하역된 항구의 보세장고나 냉동창고에서

(a) 수입국의 정부당국, 대행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화물이 통관을 마치게 된 때나

(b) 외항선으로부터 하역 후 30일이 종료한 때 중

어느쪽이든 일찍 발생한 때 종료한다.

2. 보험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뒤 보험자가 요구하는 추가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본 보험은 목적지로의 육로운송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확장담보함.

그러나

(a) 화물이 정부당국, 정부의 대행인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목적지에서 통관이 종료되거나

(b) 외항선에서 하역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는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보험은 종료됨

단,

(1) 화물은 하역항에서 검역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2) 화물은 봉합된 채로 운송되어질 것을 전제로 함.

- B. 본 보험의 목적은 하기와 같음. 즉

1. 보험목적물은 원산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생산, 준비되고 또한 포장되어야 하며 그

것은 수입 국으로 수출되기 위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 선적화물은 로이드 대리인이나 로이드 대리인이 지정한 검정인에 의해 위험개시전에 검정을 받아야 함.

2. 화물은 직송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에 의해 계속 담보함.
- C. 본 보험은 하기에 일지인 사항을 담보하지 아니함.
1. 상기 조항에 열거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상실
 3. 보험목적물에 대한 기재상 오기
 4. 훈증소독이나 그와 유사한 절차가 원산지 국가의 규정에 불일치 하는 경우
 5. 화물 발송시 화물수입국의 렛텔 규정에 불일치하는 경우
 6. 매매계약서나 기타서류의 오류나 탈루
 7. 본 보험증권에 첨부된 협회약관상의 규정이나 담보에 위배되는 경우
- D. 수입국에 의해 통상금지가 발표되거나 된 경우에 본 보험은 그와같은 통상금지가 발표 된 후에 출항한 선적과 관련한 손해는 담보하지 아니함. 다만, 통상금지가 발표되기 전에 출항한 선적분에 대해 본 보험은 수출국으로 선박이 회항함에 따른 운임이나 대체시장으로 재수출함에 따른 운임만을 보상함.
- E. 상기 A사항에서 열거된 통관거부나 몰수가 발생될 경우에 피보험자인 *****는
1. 즉시 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사항에 부응하여야 함. 이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지불하되 본 보험에서 보상(통관거부 또는 몰수)이 가능한 경들에 한함.
 2. 피보험자나 보험자는 통관이 거부되거나 몰수된 화물에 대해 매각처분한 후 그에 관련한 매득금을 자기계정으로 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본 보험상의 어떠한 조건이든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6) 중고기계수선약관

REPLACEMENT CLAUSE FOR SECONDHAND MACHINERY

기계수선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손해발생시 보험자는 새로운 기계의 현재 시가에 대한 부보가액(즉, 수리가액)의 비율로만 보상함.

7) 기계수선특별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이 보험계약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기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기계의 일부, 혹은 수개의 부분품에 면실이나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금액은 상기한 기계의 일부 혹은 수개의 부분품의 재수선 비용이나 혹은 수리비용에 만약 지불하였다면 그에 대한 운반비용(합리적이라면 운송용구에 관계없음) 및 재조립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단. 관세에 있어서는 보험가입금액에 관세금액이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서만 추가관세를 지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전체기계의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8) 국제전시일괄담보 특별약관 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이 보험은 담보위험에 기인하거나, 또는 포장, 개봉, 재포장, 취급, 전시중의 부주의 및 실수의 결과로 일어난 부분품목의 손실, 손상, 파손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보험은 대기조건의 변화에 기인한 손상위험도 담보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책임은 부분품목이 전시될 목적으로, 소유자의 보관장소로부터 실제로 이탈할때부터 개시되어, 그 이후 전시될 장소에서의 모든 운송 과정 및 전시 주최자의 수중에 있을 때에도 계속 담보되고, 부분품목의 최종양하 공항의 항공기 또는 최종 양하항의 선박에서 하역되고 소유자의 보관상소에 운송되어 인도됨으로써 종료됩니다.

이 보험이 유효한 동안 부분품목은 최대 주의를 기울여 적절히 포장 취급되어야 할 것을 특별히 합의하며 이러한 약정하에서 보험자는 포장 및 개봉, 재포장, 취급 또는 전시중의 부주의 및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손해, 손상 및 파손에 대하여는 전시주최자, 포장자, 운송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해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이 증권이 유효한 동안 손실, 손상, 파손이 있을때는 보험자나 보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즉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손상품의 처분 및 수선

손해발생시 보험자나 전시 주최자는 소유자의 사전승락 없이 손상품의 처분 및 수선에 관해 어떠한 행위도 할수 없음을 특별히 합의합니다.

9) 협회냉동식품약관(냉동육류제외) 분손부담보 및 고장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FPA (Excluding Frozen Meat)

제1조 운송약관(창고간 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i)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냉동공장 또는 냉동창고
에서 운송용구에 적재된 때부터

(ii) 운송선박에 적재된 때부터

개시되고 운송의 통상과정중 계속되며, 화물이,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냉동창고 또는 보관창고에 인도된 때,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건 혹은 목적지에서 이건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i)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또는,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키로 한 냉동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또는,

(c)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완료후 5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에 종료한다.

만약에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된 후, 이 보험기간의 만료이
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
은 전항에서 규정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
송을 개시할 때에 종료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
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또한 본조 상기에서 규정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된다.

제2조 운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
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할증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i) 화물이 위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
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
업 완료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편이 먼저 생길 때 또는,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
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 운
송될 경우에는 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항해변경약관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할증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담보가 계속됨

제4조 분손부담보약관

이 보험은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아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원인에 기인된 보험의 목적의 멸실, 질저하 또는 손상을 확장 담보함.

- (a) 연속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냉동기계의 고장 또는 정지 또는,
- (b)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의 좌초, 침몰, 대화재 또는 충돌, 또는,
- (c)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 또는,
- (d) 화재 또는 폭발
- (e) 조난항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양하.

그러나, 항상 다음 각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i) 이 보험의 효력발생시에 화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며, 적절하게 준비되고, 포장되고, 냉동되어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 (ii) 화물이 냉동창고에 처음 들어간 후, 외항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이 보험의 조건으로 한다
- (iii) 피보험자는 실제로 적재 또는 양하작업을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화물이 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항상 냉장 또는 절연된 장소에 저장되도록 보장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iv) 피보험자,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의 일부가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이를 통고할 것을 이 보험의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통고를 이 보험의 종료후 30일이후에 보험자에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보상청구금액은 면책비율의 적용없이 지급한다.

제6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이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7조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 운송 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8조 감항성 승인약관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는, 선박이 감항성 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

되었을 경우 보험 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와 관계없이 행해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 않음.

제9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0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이 보험은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하증권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 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충돌, 고정 혹은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현행 협회전쟁약관(냉동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담보용)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인한 보상청구는 담보하지 않음.

제14조 신속조치약관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의 계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

10) 협회냉동식품약관(냉동육류제외)
전위험담보 24시간고장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A/R (Excluding Frozen Meat)

제1조 운송약관(창고간 약관포함)

이 보험은 화물이

- (i) 운송개시를 위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냉동공장 또는 냉동창고에서 운송용구에 적재된 때부터
- (ii) 운송선박에 적재된 때부터 개시되고

운송의 통상과정중 계속되며, 화물이,

- (a)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냉동창고 또는 보관창고에 인도된 때,
-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건 혹은 목적지에서 이건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 (i) 운송의 통상과정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또는,
 - (ii)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기로 한 냉동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된 때 또는,

- (c)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완료후 5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에 종료한다.

만약에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된 후, 이 보험기간의 만료이전에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된 목적지 이외의 곳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전항에서 규정한 보험종료의 조건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운송을 개시할 때에 종료한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또한 본조 상기에서 규정한 보험종료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된다.

제2조 운송종료약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할증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 (i) 화물이 위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작업 완료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 중의 어느 한편이 먼저 생길 때 또는,
- (ii)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로 계속 운송될 경우에는 위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항해변경약관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할증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담보가 계속됨

제4조 전위험담보약관

이 보험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온도의 변동으로 발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혹은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이 보험은 지연 또는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혹은 비용손해를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항에 기인하는 온도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보험의 목적의 멸실, 변질 또는 손상은 확장 담보된다.

- (a) 연속적으로 24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냉동기계의 고장 또는 정지 또는,
- (b)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의 좌초, 침몰, 대화재 또는 충돌, 또는,
- (c)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접촉, 또는,
- (d) 화재 또는 폭발
- (e) 조난항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양하.

그러나, 항상 다음 각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i) 이 보험의 효력발생시에 화물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며, 적절하게 준비되고, 포장되고, 냉동되어 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 (ii) 화물이 냉동창고에 처음 들어간 후, 외항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이 보험의 조건으로 한다.
- (iii) 피보험자는 실제로 적재 또는 양하작업을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화물이 이 보험증권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항상 냉장

또는 절연된 장소에 저장되도록 보장될 수 있는 모든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v) 피보험자,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화물의 일부가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이를 통고할 것을 이 보험의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통고를 이 보험의 종료후 30일이후에 보험자에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보상청구금액은 면책비율의 적용없이 지급한다.

제6조 추정전손약관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이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7조 공동해손약관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 운송 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8조 감항성 승인약관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는, 선박이 감항성 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험 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와 관계없이 행해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 않음.

제9조 수탁자약관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0조 보험이익불공여약관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쌍방과실충돌약관

이 보험은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선하증권의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포획나포부담보약관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 선박 또는 총돌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는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총돌, 고정 혹은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현행 협회전쟁약관(냉동육류를 제외한 냉동식품담보용)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인한 보상청구는 담보하지 않음.

제14조 신속조치약관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의 계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

11) 생동물약관(B) LIVESTOCK CLAUSE(B)

이 보험증권은 어떠한 원인으로든 간에 사지골절로 고통하는 경우의 인도적 입장에서의 안락사, 투하, 유실, 도난, 공동해손 및 특별비용(피 난항에서의 선박수선비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사망위험(출산시의 사망은 제외한다)을 담보한다.

생동물의 구입시의 장소나 다른 유사 장소에서부터 위험이 개시되어 최종적으로 선적할때까지 계속되며 선적 전 담보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추가 보험료로 확장 담보된다. 모든 선적, 운송, 적재 및 하역 위험도 포함되며 검역소에 있는 동안은 30일 한도에서 담보되며, 이 증권상에 명시된 최종 목적지의 수하주에 완전히 인도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 담보된다(목적지에 도착후 7일 동안의 사망 위험도 포함). 생동물은 위험 개시후에 건강상태가 좋아야 한다. 갑판상의 적재는 자유이나 이 경우에는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상해, 접촉과 후유증, 수출입금지, 검사불합격 또는 전염병으로 인한 관계당국의 도살에 기인한 위험은 어떠한 경우

에도 담보되지 아니한다. 보상금의 지급은 사망의 경위와 분명한 원인을 기재한 관계당국의 확인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약관이 첨부된 증권의 문언, 제한조항 및 보험조건에 따른다.

12) 갑판적 약관(A) ON-DECK CLAUSE(A)

어떠한 해손담보조항(만약 여기에서 허용되었다면 그러한 부가위험의 담보를 포함) 및 협회적하약관 제1조 3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보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될 경우에는 그러한 갑판적화물의 보험조건은 보험의 위험개시때부터 투하, 유실위험을 포함하여 「단독해손부담보」(협회적하약관에 포함된 「단독해손부담보약관」에 준함)로 변경됨을 특별히 약정함.

13) 갑판적 약관(B) ON-DECK CLAUSE(B)

어떠한 해손담보조항(만약 여기에서 허용되었다면 그러한 부가보험의 담보를 포함) 및 협회적하약관 제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보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갑판에 적재되어 운송될 경우에는 그러한 갑판적화물의 보험조건은 이 보험의 위험개시때부터 유실위험을 포함하여 "I.C.C(C)"[협회적하약관 (C)에 포함된 위험 약관에 준함]로 변경됨을 특별히 약정함.

14) 송유관 약관(A) PIPE LINE CLAUSE(A)

협회적하보험약관 또는 해상확장담보약관(산적유에 적용) 이 첨부된 산적유류약관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상선 호스 연결점을 통과한때로부터 개시되어 이후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되며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서 수하주의 또는 다른 연안탱크안에 보험의 목적이 하역되므로써 종료함을 약정합니다.

15) 송유관 약관(B) PIPE LINE CLAUSE(B)

협회적하보험약관중 운송약관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선적항에서 연안탱크의 파이프 연결점을 통과한 때로부터 개시되어 이후 약관의 구정에 따라서 계속되며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서 수하주의 또는 다른 연안 탱크안에 보험의 목적이 하역됨으로써 종료함을 약정합니다.

16) 산적유약관 BULK OIL CLAUSES

- 1 피보험자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 계약서상에 선주 면책약관 또는 잠재하자 약관이 있어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는 선박 또는 부선이 강항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불강항성 또는 선주, 용선자, 대리인, 혹은 사용인의 악행 또는 비행, 침몰, 좌초, 화재, 폭발, 해수접촉을 유발하거나 또는 증권상에 담보하는 여하한 성질의 위험을 유발함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보된 화물에 손실 또는 손상을 끼쳤을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초래된 손실을 (증권상의 담보조건에 따라) 보상할 것에 동의함 도선사의 승선여부에 관계없이 항해하거나 어떤 상황하에 있는 선박 또는 부선을 예인, 구조하거나, 예인되어도 무방함.
- 2 피보험자는 다음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보험에 고지된 선박에 전면 또는 부분적인 부족선적인 경우, 타선박 또는 타선박들로 환적되거나, 초과운송 또는 중도 하역되거나, 이로, 항해 변경, 항해중절, 항해변동, 혹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라도. 본 보험은 화물이 보험증권 또는 증서상에 표기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피보험자가 부보화물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면제되거나, 그 중 어느 한 쪽이 먼저 생길 때까지 담보한다. 이 증권 또는 증서상의 여타부분에 표기된 동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담보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위험(지연 또는 기타 내용의)은 본 약관에서 담보되지 않음. 전쟁, 동맹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이나 또는 동종의 위험이 부보된 경우, 이런 위험에 대한 담보는 이러한 보험의 명시규정에 반하여 본 약관으로서 연장담보 되지 않음.
- 3 요구가 있으면 환적 위험과 부선으로부터 본선까지 및 본선으로부터 부선까지의 위험을 포함함. 각 부선, 뗏목 또는 운송용구는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함. 또한 특수한 또는 보완적인 부선운송을 요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

으로 담보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 4 공동해손, 구조비 및 특별비용은 외국의 관례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 또는 "요크앤트워프" 규칙이나 또는 요청이 있으면 운송계약에 따라 지불됨. 선박 또는 부보된 보험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 소유자에 소유되거나, 동일관리하에 있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구조, 예인 또는 조력을 받았을 경우 이런 용역의 대가는 (중일소유, 동일관리에 관계없이) 중재에 의하여 확정하며. 재정된 금액으로서 본 보험에 부보된 목적물에 부담되는 것은 본 증권하에 보상함.
- 5 항해의 개시전, 또는 후에, 과실여부 및 여하한 원인으로부터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고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선주가 법령,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면책될 경우에도 보험자는 담보된 목적물에 대한 구조비 및 특별비용을 지불하고, 공동해손이 있으면 공동해손희생, 손실 및 비용을 선주와 분담함.
- 6 공동해손을 제외하고 부보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종속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속하는 경우에 부보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부선 또는 송유관이나 부보운임에 대하여는 대위권이 없음을 함의함.
- 7 본 약관에 포함된 포획, 나포 부담보약관 및 동맹파업, 폭동, 소요 부담보약관에서 제외된 위험 외에는 선적항의 탱크를 출발한때부터 운송중 또는 운송 대기중 및 목적지의 탱크에 안전하게 인도될 때까지 어떠한 위험(다음 위험은 제외)도 담보함, 그러나 본 약관상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대화재, 물(얼음포함) 이외의 물체 또는 물건과의 충돌 또는 접촉, 화재, 폭발(어떠한 발생 원인 장소라도) 또는 화물의 강제하역이 있으므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족손, 누손, 오염손해는 담보하지 않음. 단, 악천후로 인한 오염손해는 보험자가 담보함. 본 약관상의 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은 선적, 환적 및 하역중에 연결 송유관, 이음쇠, 또는 기타로부터 유실된 유류의 보험금액을 지불한다. 보험금은 손해율의 다소에 관계없이 지불하나 통상적인 감량은 차감함,
- 8 본보험은 기관의 파열, 차륜의 파손 또는 기관, 선체, 속구의 잠재적하자, 선창,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또는 도선사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의 과실 실수로 인한 감손, 누손 및 오염손을 포함한 부보화물의 손실 및 손상을 담보함. 그러나 증권상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지연, 질의 저하 또는 시장 상실로 인한 손실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 9 본 보험 또는 보험의 효력에 의한 이재구상을 위하여 보험자를 방대로 하는 소송, 또는 재판이 대한민국 법령에 규정된 유효기간내에 시작된 경우, 감지되지 않을 것을 동의함.
- 10 보험자가 지정한 검사인의 감정하에 선적한다는 담보를 포기함.
- 11 첨부된 해상 확장담보 약관에 규정한 담보 개시전 또는 담보 종료 후까지 담보를 확장할 경우, 이러한 확장담보는 확장담보 배서 또는 기타의 곳에 당사가 서명한

문서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본 증권은 아래 사항을 제외할 것을 조건부로 함. 당사는 화물이 미국내, 미국영토의 어느 곳에서, 파나마운하 지역 또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동안 통제여부에 관계없이 원자력사고, 핵반응, 방사능, 방능오염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또는 그곳에 입는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에 대한 이채를 그 손실, 손해 및 비용이 그들에 근인 또는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증권상에 담포된 위험으로 인하거나 또는 악화되었을지라도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전항 및 증권상의 모든 규정에 따라 본 증권이 화재 위험을 담보한 경우, 원자력사고, 핵반응, 또는 방사능, 방사능오염으로부터 기인된 화재로 인한 직접손실을 본 증권에 의하여 담보함.

- 12 본 약관상에 있는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은 전시 또는 평화시 이거나, 합법 또는 기타의 경우에 관계없이 포획, 나포, 강류, 억지. 억류, 몰수, 봉쇄, 징발 또는 국유화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전시 또는 평시에 관계없이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 또는 결합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선 또는 그 물질을 응용하는 어떠한 무기로부터 또는 기뢰, 어뢰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혹은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또한 당해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의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든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과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항공기, 로켓트 또는 유사한 유도탄 및 고정 혹은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좌초, 황천, 화재 또는 폭발을 면책하는 것은 아님. 본 면책약관에 관한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해서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 13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소요 또는 이러한 행위 또는 혼란에 참가한 자에 기인하거나, 결과로 발생한 손실, 손해는 담보하지 않음.
- 14 본 보험이 기간보험일 경우, 보험증권의 만기시에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조난중이거나, 또는 피난항 또는 기 항항에 있을때에는 사전에 보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례보험료로서 보험 목적물은 계속 담보됨.
- 15 쌍방과실 충돌약관이 포함된 선하증권에 따라 화물이 적재될경우 피보험자가 상기 약관에 따라 법률상 선주에게 지불하여야 될 금액(보험금액까지)을 보험자는 본 보험에 담보되는 손실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동의함. 이와같은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배상청구로부터 자기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할 권리가 있는 보험자에게 즉시 통지할 것에 피보험자는 동의함.

17) 공동보험약관 CO-INSURANCE CLAUSE

이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_____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다음의 공동보험자를 대신하여 발행하며 각 공동보험자는 다음에 명시된 인수분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_____는 그가 이 보험 증권에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들의 인수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합의합니다.

_____는 위의 공동보험자 중의 하나로서 그의 책임은 자신이 인수한 지분에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_____는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 또는 결정을 포함하고 이 공동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며 그것은 다른 모든 공동보험자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그들을 구속합니다. 보험계약자가 _____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청한 어떠한 통지도 다른 모든 공동보험자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각 공동보험자가 위에 명시된 그의 인수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지급할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회사가 단독으로 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간사회사의 대리점이 모든 공동보험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이를 처리함을 약정합니다.

18) 원산지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이 보험증권은 원산지손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내용에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된 「특별검정약관」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검정인에 의하여 화물이 한국에 도착당시 외형상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손해까지를 확장담보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a) 외항선에 적재되기 이전에, 홍수, 해일, 고조(高潮)의 유입 또는 폭우로 인한 손해.
- (b) 외항선에 적재될 때 명백한 손해.

19) 관세약관 CUSTOM DUTY CLAUSE

이 보험증권에서 부보된 화물에 부과된 관세가 피보험위험에 의하여 입게되는 분손을 해손(海損)에 관한 보험증권의 조항에 따라 보상함, 또한 관세가 지불된 후 화물이 전손 되었을 때는 보험증권의 조항에 따라 전손금을 지급함.

보험증권에 기재된 관세의 보험금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종목적지에 부보화물이 정상상태로 도착하였다면 관계법규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총관세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은 실질적인 관세 손실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보험증권에 기재된 관세의 보험금액이 위에서 기술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액의 실질적 관세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관세의 손실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함.

20) 하송인 책임 약관 FORWARDER'S LIABILITY CLAUSE

이 보험은 부보된 적하의 운송 도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 대해서 피보험자가 적하의 하주에게 변상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쌍방간에 체결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피보험적하의 하주에게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있는 배상책임을 이 보험증권상의 제조건을 전제로 담보함

21) 소포우편약관 PARCEL POST CLAUSE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이 송달의 목적으로 우체국에 접수됨과 동시에 개시되어 우편당국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동안 계속되며 소포상에 기재되어 수취인에게 전달될 때까지 혹은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간의 경과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느편이든 먼저 종료되는 편과 함께 종료된다. 그러나 이상의 기간내라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 피보험목적물이 주소 또는 그밖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재송달되거나 발송인에게 반송되거나 간에, 이 보험은 목적물이 재송달 혹은 반송의 목적으로 증권상의 목적지에 있는 우체국을 출발함과 동시에 종료된다. 소포상의 주소가 부정확 혹은 불분명 또는 불충분함에 기인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와 우편당국이 수취인의 수취거절, 수취인어로의 전달불능의 결과로 피보험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생긴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상청구 역시 담보하지 않는다.

22) 상표약관

LABEL CLAUSE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상표만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상이 보험증권상의 제조조건에 의한 이재보상청구가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신상표 및 상표 재부착비용을 지급하는데 충분한 금액으로 제한됨.

23) 실손부분보상원칙 약관 PAIR & SET CLAUSE

보험의 목적이 1벌 또는 1조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피해를 입은 품목이 벌 또는 조단위의 부분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가액에 관계없이 그 손해입은 부분의 가액이상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벌 또는 조의 보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상으로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24) 해손정산인약관 AVERAGE ADJUSTERS CLAUSES

전손위험을 담보하며 연속적인 사고, 멸실, 손상, 공동해손, 구조비 또는 제비용에 기인하여, 다른 어떤 종류의 보험에 의한 수익이 없이, 피보험재간의 가액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감소부분의 금액을 보상함.

또한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위험으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손상에 부수하여 피보험재산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담보물건의 가치의 멸실이나 감소으로 회복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지불을 함.

다음의 약관내용에 명기된 위험들을 포함한 전위험을 담보함:

태만, 멸실, 무능력, 선장의 판단착오, 선원이나 기타 선주의 하수인이나 고용인의 행위, 도선사, 항만당국 또는 지방관청의 어떤 행위, 건조자, 용선자, 운영자 또는 그들의 하수인이나 고용인의 행위, 손해검정인, 대리인, 또는 연료공급자 또는 그의 대리점이나 하수인 또는 고용인의 어떤 행위, 여객 또는 집단자들의 행위 등의 제위험을 본 보험은 특별히(피보험적하에 영향을 끼치는 한) 담보하며 또한 폭발, 붕괴, 보일러의 파괴, 선축의 파손 또는 그 어느 하나의 결과로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며, 잠재 하자 및 이의 결과로 발생된 손해, 지진, 화산폭발, 홍수, 광풍, 그리고 어떤 우연한 사고로 일어나는 손상 또는 멸실을 특별히 담보하며, 폭발, 소요, 폭동 악의적인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의 것이 원인이 되었든 해안에서 일어났든 다른 곳에서 일어났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특별히 담보하

며 또한 선박의 항해, 운영 또는 그 선박의 설비나 도구에 부수되어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특별히 담보함.

해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그들의 하수인, 또는 피보험적하에 관계되어 있는 자들의 멸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나 악행은, 만약 그 부당행위나 악행이 개입되지 않는 멸실이라면 본 보험 증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멸실인 경우에는 선의의 피보험자로부터 본 보험증권에 의하여 그 멸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 않음.

25) 양하후위험담보약관 RISK AFTER DISCHARGE CLAUSE

이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화물이 수송 중에 입는 중과,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최종창고에 인도되거나, 외항선으로부터 하역이 완료된 날의 자정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날까지 중. 어느 것이 먼저 생기든 그때까지 담보가 계속됨을 약정한다.

또한 이 보험증권은 상기 60일이 되기 이전에는 상기 인도가 될 때까지의 수송중인 화물의 보관도 담보함을 약정한다.

26) 뗏목약관 RAFT CLAUSE

1) 보험의 종료

이 보험증권상의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도착 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하역이 완료되어 목재보관소까지 예인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는 동안의 위험을 하역이 완료된 날의 자정으로부터 기산하여 ()일간 확장 담보한다.

2) 보험조건

개별 뗏목의 전손이나 구조비를 지급한다.

27) 출항일자담보 SAILING DATE WARRANTY

이 선박은 ()일 또는 그 이전에 출항할 것을 약속함.

이 선박이 위의 일자에 출항하지 아니할 경우, 이 보험증권에 포함된 여하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 조건 및 제약관이 적용됨.

28) 특별검정약관 SPECIAL SURVEY CLAUSE

여기에서 보상청구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인정한 검정인들 중에서 검정인을 임명함 이 보험증권하에서 보상받을 피보험자의 권리는 위에 말한 검정인에 의하여 발행되고 확인된 검정보고서의 제출여하에 따름.

29) 운송종료 특별약관(30일간) TRANSIT TERMINATION CLAUSE (30DAYS)(A)

협회 적하약관상 운송약관 (C)항의 " 60일" 이란 단어가 " 30일" 이란 단어로 대체되는 것을 특별히 약정합니다.

30) 운송종료 특별약관(30일간) TRANSIT TERMINATION CLAUSE (30DAYS)(B)

협회 적하약관상 운송약관 8.(8.1.3)항의 " 60일" 이란 단어가 "30일" 이란 단어로 대체되는 것을 특별히 약정합니다.

31) 어획물보험 특별약관 (어장으로 부터) SPECIAL FISHING PRODUCTS CLAUSE (From Fishing Ground)

- 1 이 증권하의 담보가액은 합의된 단가에 다음의 시점 중에서 먼저 발생한 때에 선전된 어획물의 양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어선이 증권에 기재된 양륙항에 도착하였을 때
 - 나. 어선이 전손된 때
 - 다. 대 이재 (침몰, 좌초, 화재, 충돌)가 발생 한 때
- 2 여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하의 책임은 부보물건이 증권에 기재된 선

박의 냉각실에 처음 입고되었을 때에 개시하여 정상적인 운송경로(어로현장을 향한 항해, 어로현장으로부터의 항해, 어로현장 사치의 항해를 포함함)를 담보하며, 증권상이 기재된 양하항의 수취인에게 인도되었거나, 여타의 최종창고 또는 장치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또는 최종 양하항에서 어선으로부터 부보물건이 하역 완료된 후 5일이 경과한 때 중 먼저 발생한 시점에서 책임은 완료된다.

3 어로 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보험료조정을 전제로 하여 담보한다.

4 가.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증권에 기재된 어선에 무선전신기 또는 무선전화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본사에 매일 어획량 보고를 하여야 한다.

32) 개포지연약관(잠재손실약관)

DEFERRED UNPACKING CLAUSE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멸실이나 손상이 운송담보 기간중에 발생되었음이 입증된다면 피보험자는 상기 화물의 검사나 개포에 있어서 ()일간 자연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받지 않음.

33) 대위권 포기 약관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보험자는 용선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포기하며, 이 대위권 포기에는 해당어선의 소유자에 대한 구상포기를 포함한다.

34) 임신 동물 () 확장담보약관

SPECIAL CLAUSE FOR ANIMALS () With EMBRYO

다음과 같이 특별히 약정함.

1 태종의 동물 ()는 별개의 동물로 간주함.

2 이 계약상 담보기간 동안에 탄생된 유산이 아닌 한, 태종의 동물()의 사망 및 또는 폐사는 담보하지 않음(단, 임신중인 동물()의 사망 및 /또는 사상(死傷)으로 인한 손실은 예외로 함).

3 생후의 동물()새끼는 동물()와 같은 조건으로 담보함.

35) 활어류 약관(A)
LIVE-FISH CLAUSE(A)

1. 협회 적하약관 중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피보험자 창고나 세관 창고에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항에서 양하 후 24시간 경과될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2. 이 보험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 (a)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 어류 1미 마다의 사망 또는 폐사
 - (b) 각 포장당 불착
3. 상기 2(a)항과 협회전쟁약관(적하)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나포, 강류, 억지와 검역 또는 다른 유사한 제 규정 하에서 거부의 결과로 기인된 멸실 또는 손상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6) 활어류 약관(B)
LIVE-FISH CLAUSE(B)

1. 협회의 적하약관중 운송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피보험자 창고 또는 세관창고에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또는 ()공항의 도착 후 24시간 경과될 때까지,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까지만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2. 이 보험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 (a)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 어류 1미 마다의 사망 폐사
 - (b) 각 포장당 불착
3. 상기 2(a)항과 협회전쟁약관(항공적하)의 어떠한 반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나포, 강류, 억지와 검역 또는 다른 유사한 제 규정하에서 거부의 결과로 기인된 멸실 또는 손상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7) 국제안전경영코드 약관
CARGO ISM ENDORSEMENT CLAUSE

이 보험은 Ro-Ro passenger ferries 에 선적되는 화물에 적용되며, 1998년 7월 1일부로 다음에 선적되는 화물에 적용된다.

- 1) 12 인 초과 여객선,
- 2) 총톤수 500 톤 이상의 유조선, 케미컬 탱커, 가스 캐리어, 벌크 캐리어 및 고속 화

물선

또한 2002 년 7 월 1 일부로 500 톤 이상의 이동식 해안 시추선 및 그 외 화물선에 선적되는 화물에 적용한다.

이 보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ISM Code 의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이나, 혹은 선박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ISM Code 의 안전경영적합증서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그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멸실, 손상, 혹은 비용은 담보하지 아니한다.

단, 보험목적물이 선박에 선적될 때,

- a) 그 선박이 ISM Code 의 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 b) 선박의 소유주나 운영자가 안전경영적합증서를 보유하지 못한 사실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통상의 무역거래 과정 중에 알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또한 ISM Code 는 1974 년 수정된 SOLAS 협약에 따른다.

이러한 면책은 가계약 (Binding Contract) 하에 선의로 보험목적물을 구입하였거나 구입하기로 합의한 보험금 청구 당사자에게 이 보험이 이미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8) 건조비약관 DRYING CHARGE CLAUSE

단독 해손부담보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은 피보험목적물이 우수, 담수 및 혹은 해수와 실질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유손(濡損)되었을 경우에 등 건조비용을 지급함. 그러나 이와같은 손해로 인하여 가치가 저하된 것에 대하여는 부책하지 않음.

39) 갑판적재화물특별약관(원목) SPECIAL CLAUSES FOR ON-DECK CARGO(LOGS, LUMBERS)

해상화물운송계약에 의하여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 행사에 의하든 아니하든간에 갑판적으로 운송될 전체고지 비율이나 가액을 초과하여 갑판적으로 선적되었을 경우에 보험계약에서 갑판적으로 고지된 비율이나 가액과 실제 갑판적으로 적재된 비율 또는 가액에 대한 비율로서 투하 및 유실에 기인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함의함.

40) 고무약관 및 증액보험증권용약관 상자, 대(袋), 나포장의 고무용 협 인

런던고무무역협회, 런던보험자협회, 리버풀보험자협회, 로이드보험자협회
RUBBER CLAUSES & CLAUSES FOR USE IN "INCREASED VALUE POLICIES"
(FOR USE IN CONNECTION WITH RUBBER IN CASES AND/OR BALES AND/OR BARE
BACK BALES)

제1조 이 보험은 화물이 본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적항의 창고, 보관장소를 수송개시를 위하여 떠날 때부터 개시되고, 통상의 수송과정중에 계속되며,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서의 창고 또는 보관창고에 인도될 때까지 그곳에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계속됨.

단 제조업자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가 아니어야 함.

만일, 화물이 그러한 도착항 이외의 장소에 인도될 경우에는, 이 보험은 화물이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에 적재될 때까지 또는 그러한 도착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양하가 완료된 날의 오후 12시부터 30일이 경과될 때까지의 어느 쪽이건 먼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됨.

담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이 만료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협정될 보험료를 지급하고 위의 만료일을 초과하여 화물의 연장담보를 받을 수 있음.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주나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본조 상기한 바에서 규제된 보험종류의 조건 및 제2조의 규제에 따라) 유효하게 계속됨.

제2조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해상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제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수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청구를 받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a)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되거나,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 작업완료 후 60일이 경과되거나 그중의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 때 또는,

(b) 만약 화물이 상기 60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 목적지로 계속 운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보험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됨.

제3조 본선까지의 및 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뗏목 또는 부주(舢舨)에 의한 수송을 포함함. 각 부선, 뗏목 및 부주는 각기 별도로 부보된 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

지 않음.

제4조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물,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5조 이 보험은 분손을 지급하며, 또한 도난, 발하, 완전한 1개단위 포장물의 불착, 폭발, 담수, 선창 일부분의 응결, 구손(鉤損), 어떠한 물질 또는 액체의 흘림이나 누손, 타화물(고무제외)에 의한 손해, 또한 젖고 습기있는 깔개로부터 습기에 의한 손해의 위험등을 담보함.

그러나 이 보험하에서 담보된 수송과정중에 해수, 담수, 선창 일부분의 응결, 여하한 물질 및 액체의 흘림이나 누손, 혹은 젖고 습기있는 선창깔개로부터의 습기와 개포(個包)와의 실질적인 접촉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한 곰팡이에 의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은 부책하지 않음.

이 보험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연 또는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않됨.

이 보험증권하에서 회수될 수 있는 보상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됨.

제6조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검정인간에 손상고무에 대한 감가범위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인된 표본검사인이 채취한 표본을 검정보고서와 함께 London에 고무교역협회에 송부하여 감가범위에 관한 한 이 협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또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임.

제7조 추정전손약관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화물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에 화물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제8조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 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9조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이 감항성 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계없이 행하여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는 않음.

제10조 모든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은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제11조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2조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총돌」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3조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기도한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또한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본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에 의거, 직접(또한 당해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는 충돌에 관련된 타선박이 수행하고 있었던 항해의 임무 또는 성질에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는 한 고정 또는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는 제외)와의 충돌 또는 접촉, 좌초, 황천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님. 또한 이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또는 공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권이 포함됨. 또한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기는 국내투쟁의 결과와 해적행위를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3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전쟁약관(고무교역)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4조 하기 사유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하지 않음.

(a)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직공, 또는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b) 동맹파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의 결과로 생긴 것.

만약, 제14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는 적하보험용의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고무교역)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15조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추가보험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손해 또는 「클레임」이 있으면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이 손해 또는 사고발생시점에 총보험금액에 증액되는 것으로 간주함.

증가액보험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항을 적용함.

적하의 증가가액 £.....은 이를 포함하여 전체금액으로 평가한 화물에 대한 총보험금액의 일부로 간주함. 화물에 대하여 부보된 원보험이 선불선임도 담보할 경우에는, 이 보험상의 「화물」이라는 말은 선불선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가 부보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추가보험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손해 또는 「클레임」이 있으면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이 손해 또는 사고발생시점에 총보험금액에 증액되는 것으로 간주함.

제16조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 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의 계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

41) 원목무역협회약관 및 증액보험증권용약관
협 인
영국원목무역협회, 런던보험자협회, 리버풀보험자협회, 로이드보험자협회
TIMBER TRADE FEDERATION CLAUSES
AND
CLAUSES FOR USE IN INCREASED VALUE POLICIES

제1조 이 보험증권 본문에 기재된 항로가 다만 선적 및 양하의 항구 또는 지역만을 기재한 것에 관계없이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언제나 피보험이익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항선으로의 운송이 개시될 제재소, 창고, 공장, 저목장(貯木場) 또는 구내에서 피보험목적이 육상 또는 수상 운송용구에 적재되거나 부유(浮流)상태에 있을 때부터 개시하며 화물이 외항선으로부터의 양하항이나 기타 지역(더 이상의 해상항해는 제외)의 피보험자 또는 인수인이 관리가능한 최종 목적지에 있는 제재소, 창고, 공장, 저목장 또는 구내에 육상 또는 수상운송으로 인도될 때까지의 운송도중 계속됨.

그러나, 피보험화물이 선박 및 부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양륙된 지점에서 저장되었을 경우에, 화재로 인한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비록 피보험자나 수하주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최종양륙이 완료된 날의 자정으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이상을 초과하지 않음.

제2조 이 보험은 전조 및 다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계속 유효함.

(i) 이로,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및 환적

(ii) 해상화물운송계약에 의거,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결과로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

제3조 만약,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혹은 기타의 사정으로 화물이, 본 약관 제1조에서 담보된 목적지에 인도되기 이전에 운송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보험은 화물이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될 때까지 또는 만일 화물이 이 약관 제1조에 담보된 목적지 또는/기타의 목적지에 계속운반된다면 화물이 그러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기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계속됨.

제4조 이 보험은 본선까지의 및/본선으로부터의 부선, 뗏목 또는 부주(艇舟)에 의한 수송

을 포함함. 피보험자는 부선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어떠한 계약에 의하여도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음.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있어서는 모든 부선의 감항성은 승인된 것으로 함.

제5조 항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혹은 보험의 목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기재상의 탈루나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협정되어야 할 추가보험료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제6조 (a) 제6조 (b)의 규정에 따라 이 보험은 피보험목적에 생긴 멸실 및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보험은 지연 혹은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에까지 그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b) 갑판적은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 침몰, 대화(大火), 화재 또는 충돌의 경우 이외에는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음, 그러나, 이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투하 또는 유실에 의한, 혹은 적재, 환적 또는 양하시에 전손이 될 수 있는 화물의 여하한 부분에 대한 협정보험가액을 보상하며, 또한 피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화재, 폭발에 기인하거나 또는 선박 및(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기인하거나 혹은 피난항에서의 화물양하작업에 기인된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또한 보상하며, 또한 선적항, 기항항 혹은 피난항에서의 양륙작업, 입고 및 운반을 위한 특별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만일 이들 비용이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이 첨부된 영국해상보험증권 표준양식에 의거, 보험자가 부책하여야 할 것이라면, 그 특별비용도 보상함. 선미갑판, 선수갑판, 갑판실, 차랑(遮浪)갑판 또는 기타 밀폐된 장소에 적재된 화물은 갑판 밑에 적재된 것으로 간주함.

(c) 각 뗏목, 부선, 갑판적, 선하증권 또는 각 선하증권의 갑판적은 만일,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으면 별개의 보험으로 간주함.

이 약관 제6조 (a), (b) 및 (c)에서의 보상청구는 그 청구액이 보험금액의 0.5% 또는 £10중 낮은 금액에 달한 경우에 보상됨.

제7조 화물에 손상이 생길 경우, 추정전손을 위한 보상청구는 화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합리적으로 위부되지 않는 한, 이 보험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며, 또한 화물을 회수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운반하는 비용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화물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정전손에 의한 보상청구는 보상되지 아니함.

제8조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 운송 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twerp」 규칙에 의거 정산됨.

제9조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선박이 감항성 있는 것으로 인정함.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보험증권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그 손해가 피보험자의 관여없이

행하여진 선주 또는 그 사용인의 불법행위나 비행에 기인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침해받지는 않음.

제10조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제11조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본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위 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보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해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제12조 본 보험하에서 위험이 개시될 때 유효한 표준포획나포부담보약관에 의하여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증권에서 제외된 위험을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2조가 말소되는 경우는 현행 협회전쟁약관(원목교역)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제13조 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

본 보험하에서 위험이 개시될 때 유효한 표준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에 의하여 영국의 표준해상보험증권에서 제외된 위험을 담보하지 않음.

만약 제13조가 말소되는 경우는 현행 협회동맹파업폭동소요부담보약관(원목교역)이 이 보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제14조 피보험자가 여기에 부보된 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금액은 멸실 또는 보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 멸실 및 사고시에 총보험금액으로 증액된 것으로 간주함.

증가가액에 대한 보험에 있어서는 다음의 약관이 적용됨 :

증가된 화물의 가액 £.....은 이러한 총가액으로 평가된 화물에 대한 총보험금액의 일부로서 간주함. 화물에 대하여 체결된 원래의 보험계약은 선불되었거나, 선박 및(또는) 화물의 멸실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할 운임도 담보하며, 또한 지급된 비용도 담보함. 이 보험증권에서 「화물」이라는 용어는 운임 및 비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피보험자가 여기에 부보된 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추가보험계약을 하였을 경우 화물의 가액은 멸실 또는 보상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 멸실 또는 사고시의 총보험금액으로 증액된 것으로 간주함.

제15조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담보의 계속을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담보의 계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

42) 밀레니엄 약관(적하/항공화주화물)
COMPUTER MILLENNIUM CLAUSE
(CARGO/SHIPPERS INTEREST INSURANCE)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전자 시스템의 사용 및 작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멸실, 손상, 배상책임 및 비용에 대하여 그러한 멸실, 손상, 배상책임 및 비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i) 2000년 날짜 변경 또는 다른 날짜의 변경, ii) 그러한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다른 전자 시스템의 교체, 수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되지 아니합니다.

43) 운송종료 약관 (테러리즘)
TERMINATION OF TRANSIT CLAUSE (TERRORISM)

이 약관은 절대적인 것이며 이 보험에 포함되어 이것과 저촉되는 일체의 규정에 우선함.

1. 이 보험증권 또는 여기에 관련된 약관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이 보험증권이 보상하는 한, 이러한 보상은 피보험화물이 통상적인 운송과정에 있음을 조건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종료됨.

1.1 이 보험증권에 포함된 운송약관에 따라, 또는

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1.3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건 목적지에서 이건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할당·분배를 위해 사용코저 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또는

1.4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하역 완료후 60일이 경과될 때, 다만 수입의 경우 30일이 경과 될 때.

1.5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최종 양하장소에서 항공기로부터 피보험목적물의 양하작업 완료후 혹은 30일이 경과될 때,
중의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든 그때에 담보가 종료됨.

2. 만약 이 보험증권 또는 여기에 관련된 약관들이 특별히 내륙운송 또는 보관장소로부터 시작되는 추가적인 운송을 담보할 경우, 담보는 재게되어 다시 조항1에 따라 종료되는 통상적인 운송중에도 계속됨.

3. 이 약관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준거함.